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664호
----------	--------

제출년월일 2025. 9. .
제출자 김포시장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숲 등의 조성·심의 위원회 심의대상에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포함(안 제3조제1항제2호)
- 나.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 부담자가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안 제6조제6항)
- 다. 그 밖의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6. 16. ~ 7. 7.(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나) 경기도 : 정원산업과

김포시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법 제12조제2항제1호”를 “법 제12조제3항제1호”로 한다.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단서 중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산림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산림과장 신 동 진
	팀장 직위·성명	도시녹화팀장 최재명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녹지주사 박근희(☎234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p>
<p>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생략)</p> <p><신설></p> <p>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 ----- -----.</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2조제3항제1호----- ----- ----- -----</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p>	<p>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3항----- ----- -----</p>

(이하 “가로수 조성등” 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 ④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원상복구에 해당하는 금액 -----

⑥ 시장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김포시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도시공원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 <삭제 2023.9.27.>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조성등”이라 한다)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부담금) ① 제5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별표의 훼손자·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의 경우에는 나무가 죽을 경우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